



제308회 임시회  
2012. 4. 17.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2년 4월 6일
- 회부일자 : 2012년 4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행정용어 순화 및 금지 규정 완화와 중복 문구 등의 정리로 긍정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,
- 「시험종별에 따른 처리기간과 검체소요량」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전문적인 시험·검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① 행정용어 순화

- “단속” → “점검”으로 개정 (안 제5조제1호)
- “지도·단속” → “지도·점검”으로 개정 (안 제5조제3호)

②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규정 완화 (안 제8조)

변 경 전		변 경 후
<p>시험의 결과는 시험 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·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</p>	⇒	<p>① 시험결과에 대하여 광고 또는 표시할 경우 <u>시험성적서 전문(全文)을 기재</u>                  ②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<u>변경하여 기재 하거나</u> “정부보증”, “검정완료” 등 <u>유사문구 기재 불가</u></p>

③ 법인인 경우 포함 표기 (안 제9조)

- 성명 →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

#### ④ 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변경 (별표)

① 단위 통일(표준화) :  $l \rightarrow L / cc, ml \rightarrow mL / M \rightarrow m$   
 - 국제단위계 기준 약호로 통일

#### ② 문구 삭제

- 먹는물(샘물)검사 처리기간 중 “여니시아균검사28일” 문구 삭제  
 ▶ 12일(여니시아균검사28일) → 12일  
 ↳ 시험법 변경으로 12일내 검사 가능

#### ③ 법령 개정에 따른 검사 명칭 변경

- 공중이용시설 검사 →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

#### ④ 세분화 표기 : “임상학적 세균검사”란을 삭제 후 5종류로 세분화

시험종별	처리기간	시험용검체소요량
레지오넬라균 검사	15일	1.대변 : 5g 이상
식중독균 검사	20일	2.소변 : 10mL 이상
세포배양 관련 검사	30일	3.혈액(혈청) : 5mL 이상(1mL이상)
결핵균 검사	12주	4.환경수계검체 : 1L 이상
기타 세균검사	10일	5.조리식품 : 검체별 100g 이상
		6.식품용수 : 1L 이상
		7.호흡기검체 : 바이러스수송배지/무균용기

⑤ 중복자료 통일 : 유통의약품 등 검사 → 의약품 등 검사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

- 동 조례안은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열린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, 「시험종별에 따른 처리기간과 검체소요량」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시험·검사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일부 행정용어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정비하거나 순화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시험의 결과를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·표시할 수 없도록한 종전규정을 개정하여 시험의뢰 목적 이외로 광고하거나 용기·포장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 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는 것으로 완화하고, 다만 일부 문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(안 제8조),
- 밀리리터, 미터 등 각종 단위를 표시하는 기호를 국제단위계 기준 약호로 통일 하였고(별표), 내용이 중복되는 의약품 등 검사 항목과 유통의약품 등 검사항목을 통합하여 의약품 등 검사항목으로 통일하는 등(별표)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임상학적 세균검사 항목이 세분화되면서 처리기한이 종전 10일에서, 15일에서 최장 12주까지 늘어나는데 따른 민원발생 우려 등 문제점과 의약품 등 검사항목에서 검체소요량이 삭제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